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6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. 02. 25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조례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, 공간정보협회의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 등을 명시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삭제 (안 제2조제5호, 안 제10조제2항)
- 공간정보협회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 명시(안 제9조의2)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5호 중 “자치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”을 “자치구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유통할 때는”을 “유통할 때,”로 한다.

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수립하고”를 “수립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일”을 “자치구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관리기관“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와 그 소속 행정기관, 자치구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, 그 밖에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치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치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공간정보 표준 준수)</p> <p>① <u>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, 관리,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</u>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공간정보 표준 준수)</p> <p>① ----- <u>공간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·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</u> ----- ----- <u>기술기준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8조(공간정보 표준 준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유통할 때,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라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그 소속 행정기관, 자치구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”을 “자치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”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·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.
11. “도시기본공간정보”란 주소·경계·기반시설·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 범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생산·관리·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”를 “생산·관리·활용·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간정보체계의 구축, 관리,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”를 “공간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·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,”로 하고, “기술기준”을 “기술기준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”을 “적합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·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
2.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
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
4.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·관리·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협의회는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
수 있다.

⑥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”를 “수립하여,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관리기관이 자치구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외한다.이하”를 “제외한다. 이하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,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”을 “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”를 “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[별표 12]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공간정보의 생산
· 관리 · 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
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
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
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) 관
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
효율적인 구축 · 관리와 활용을
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
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간정보 표준 준수) ① 관리
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
축, 관리,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
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
야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

정보체계를 말한다.

11. “도시기본공간정보”란 주소 ·
경계 · 기반시설 · 지형지물 등
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
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
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
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
----- 생산 ·
관리 · 활용 · 유통 등에 관하여
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
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-
-----.

제6조(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) --

----- 하고, 관련 업무의 지정
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공간정보 표준 준수) ① ----
----- 공간정보체계를 구축
· 관리 · 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
유통할 때, -----
- 기술기준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

축·관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·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축·관리) ① -----

--- 적합하도록 -----
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

기능)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·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

2.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

4.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·관리·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격은 규칙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중복투자 방지) ① (생략)

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③ 관리기관의 장(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

으로 정한다.

④ 협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⑤ 협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의 협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중복투자 방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수립하여, -----

----- . 다만, 관리기관이 자치구 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 제외한다. 이하 -----

-----.

